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	
		배포일시	2020. 8. 26.(수) 총 5매(본문2, 참고3)		
담당 부서	공간정보제도과	담 당 자	• 과장 손종영, 사무관 권순길, 주무관 서태진 • ☎ (044) 201-3478, 3479, 4728		
보 도 일 시		2020년 8월 27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26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국토부,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-호우 피해지역에 2년간 전액50% 감면...연말까지 25억 원 부담경감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.
-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토지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.
-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·개축, 시설물의 위치 확인,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 호우피해 복구에는 경계복원측량,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*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, 토지분할측량, 지적현황측량,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,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
-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 피해 지역이며,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의 '피해사실확인서'에 의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*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
- 주거용 건물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,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%를 감면받을 수 있다.
-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·군·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(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, <http://baro.lx.or.kr>), 및 전화(바로처리콜센터, 1588-7704)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측량신청을 할 수 있다.
- 지적측량이 신청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 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-라인으로 자체 확인하므로 ‘피해사실확인서’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.
-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, 폭설, 태풍,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.
- 특히 올해는 코로나-19 특별재난지역(대구, 경산, 청도, 봉화)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30% 감면하고 있으며, 연말까지 약 25억 원의 주민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“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권순길 사무관(☎ 044-201-472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지적측량 신청방법

□ 감면을 위한 구비서류

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(별지 제18호서식) <개정 2012.8.28>

피해사실확인서					
발급번호: 계 호					
피해자	주소		생년월일		
피해 내용					
대상	단위	피해 규모	피해물의 소재지	피해 일시	재해의 종류
영도					
계출처					
위 사람이 소유(경작)하고 있던 재산에 위와 같이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20 년 월 일					
신청인: 성 명 (인)					
생년월일					
주 소					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
읍·면장					
위 사실을 확인함.					
년 월 일					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					
* 이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.					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4조에 의해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발급
-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장에게 제출
-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
- 자연재해일로부터 2년 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적용

□ 지적측량 신청 창구

회사	구분	신청방법
LX 한국국토정보 공사	방문	· 지적측량접수창구(시군구청 민원실)
	인터넷	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(http://baro.lx.or.kr) – 회원가입 후 상담접수
	전화	· 바로처리콜센터(1588-7704) 또는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– 허가 또는 토지이동이 필요한 등록전환측량, 분할측량은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이용
민간수행업체	전화 또는 방문	· 가까운 민간수행업체 방문 또는 전화 접수 –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만 가능

참고 2

수해지역 지적측량이 필요한 사례

사진	사례
	<전북 남원> 수해로 훼손된 농경지 경계복구 및 경계확인 (수수료 50% 감면)
	<충남 예산> 하천범람으로 주택 반파 및 침수 피해 복구 (수수료 50% 감면)
	<경북 울산> 산사태에 의한 주택 전파 피해로 주택 신축 (전액 100% 감면)

참고 3 유사 감면사례

1.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2.8억 원)

- 2017. 11. 경상북도 포항 지진피해지역(규모 5.5) 주거용 주택의 전파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하여 민간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을 100% 감면하고,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는 「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3조제2항에 의거 50% 감면
- 위험도평가단 진단 결과 “전파”로 판정된 경우

2.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10.2억 원)

- 2019. 5.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주거용 주택의 소실(전소 또는 반소)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하여 민간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을 100% 감면하고,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는 같은 규정 제23조제2항에 의거 50% 감면
- 재난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감면 가능

3. 태풍(미탁)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2.0억 원)

- 2019. 11. 태풍(미탁)에 의하여 발생한 주거용 주택 소실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을 100% 감면하고,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는 같은 규정 제23조제2항에 의거 50% 감면
- 재난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감면 가능

4. 코로나-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13억 원_연말 25억 원 예상)

- 2020. 3.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(대구, 경산, 청도, 봉화)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같은 규정 제23조제4항에 의거 측량수수료 30% 감면
- 2020. 12. 연말까지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확산 시 기간 연장